

제16장 환경과 무역

제16.1조 배경 및 목적

1. 「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」, 「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」, 「1992년 의제 21」, 「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」, 그리고 「2012년 리우+20의 결과문서 “우리가 원하는 미래”」를 상기하며, 양 당사국은 경제 발전, 사회 발전, 그리고 환경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지지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.
2.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증진할 것이며,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.
3. 양 당사국은 환경 기준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 동의한다.

제16.2조 적용범위

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법과 규정을 포함한 조치에 적용된다.

제16.3조 보호 수준

1.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.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각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16.4조 다자 간 환경협정

1. 양 당사국은 다자 간 환경협정(이하 “다자환경협정”이라 한다)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이 그러한 협정의 목적 달성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,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의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.

제16.5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

1.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,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, 규정, 정책 그리고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. 이에 따라, 어떠한 당사국도 그러한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16.6조 환경영향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적절한 시기에 각국의 참여적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.

2. 양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이 협정의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기법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한다.

제16.7조 양자 협력

1.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있어서 환경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정 또는 약정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.

2.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.

가. 환경친화제품을 포함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보급 촉진

나.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증진에 관한 협력

- 다.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,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
 - 라. 환경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환경 두뇌집단 협력 메커니즘 구축
 - 마. 환경분야의 워크샵, 세미나, 박람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역량 구축
 - 바. 각국에서 시범지대로서 환경산업단지 조성, 그리고
 - 사.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
3. 양 당사국은 2014년 7월 3일 서명된 「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보호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」와 같은 기존 양자 합의에서 약속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분야를 포함한 환경분야에서 양 당사국 모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.
4. 양 당사국은 양국 간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16.8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

- 1.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.
- 2.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3. 양 당사국은 환경과무역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양 당사국 행정부 내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.
- 4.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합한다.
- 5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며, 그러한 자원은 이용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.

제16.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